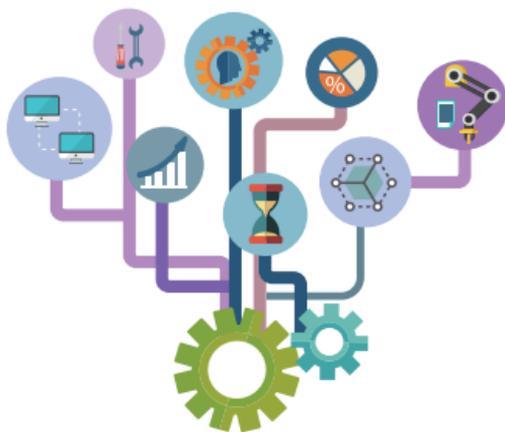


2018

# 산업기능요원 복무 길라잡이



## 산업기능요원이란? ..... 1

## 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 ..... 3

- 1-1.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1-2.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- 1-3.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.
- 1-4.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
- 1-5.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## 2. 출장·파견은 갈 수 있나요? ..... 11

- 2-1.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2-2.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- 2-3.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## 3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 ..... 17

- 3-1. 당연전직,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- 3-2.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- 3-3.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3-4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## 4.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나요? ..... 27

- 4-1.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- 4-2.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.

## 5.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있나요? ..... 33

- 5-1.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
- 5-2.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## 6.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 ..... 37

- 6-1.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6-2.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

## 7.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? ..... 41

- 7-1.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- 7-2.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7-3.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.

## 8.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 ..... 47

- 8-1.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- 8-2.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## 9.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되나요? ..... 51

- 9-1.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9-2.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- 9-3. 편입취소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## 10. 복무만으로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 ..... 59

- 10-1.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합니다.
- 10-2.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.



## 산업기능요원이란?

-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현역병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·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·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입니다.
-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며, 보충역은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되고 26개월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.
  - ※ 단,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전공 등 별도자격요건 필요

##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, 보충역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·생산분야 또는 원재료·제품·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.
-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,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업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특히,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을 받게 됩니다.



- 1-1.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1-2.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- 1-3.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.
- 1-4.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
- 1-5.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

## 1-1 |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
- **현역병 입영대상자** :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별도의 분야
- **보충역** :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·생산분야 또는 원재료·제품·생산품의 운송분야, 건설공사의 현장분야
  - ☞ 병무청장이 인정한 별도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  
(복무분야변경신청서 제출)

- 편입당시의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으로 제조·생산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
-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재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편입당시 분야가 아닌 다른 생산·제조분야 등에 근무하는 경우
- 병역지정업체가 화재 등 재해로 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
-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생산설비의 폐쇄·이전·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편입당시 해당 직무 분야가 아닌 생산·제조분야에 복무하는 경우



##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

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병역지정업체의 사장이 운영하는 ○○소재 개인사업체에 3개월 동안 근무하며 주간에 공무원 학원 수강  
▶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

## 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

전자기기기사 자격증으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발부 연구원으로 8개월 동안 근무  
▶ 병역법 위반 : 8개월 연장복무

## 1-2 |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
- **함께 할 수 없는 업무**
  - 민법·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·감사·상무 등 임원
  - 편입당시의 제조·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, 영업 등
- **개인 영리활동 금지**
  - 근로시간 중 개인 영리활동은 할 수 없음

## 사무관리 업무를 한 위반사례

정보처리 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 등 경리업무를 5개월 동안 근무  
▶ 병역법 위반 : 5개월 연장복무



### 1-3 |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.

#### ○ 바꿀 수 있는 대상자

- 편입당시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
-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편입한 사람이 재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고 편입당시 기술자격 외의 제조·생산 분야 또는 제품 운송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 등

#### ○ 바꾸는 절차

-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분야변경신청서를 제출
-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- 복무분야변경신청서
  -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(4급 판정자는 필요 없음)
- ※ 단,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편입한 사람이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(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)을 소지하고,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전공하여야 함.



### 1-4 |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

#### ○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,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.

〈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〉

유형	내용	처리기준	
		위반기간	의무자
1. 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	가. 전직·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 나.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, 출장, 파견근무를 한 경우		연장 복무
		3개월 이상	연장 복무
	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경고
		1개월 미만	시정
2.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	가. 편입당시 연구·기술자격·면허 외(사무직, 영업직 등 제조·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)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 나. 편입당시 연구·기술자격·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, 제조·생산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		연장 복무
		3개월 이상	연장 복무
	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경고
		1개월 미만	시정
3. 겸직금지 규정 위반	병역지정업체의 이사·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·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	1개월 이상	연장 복무
		1개월 미만	경고
4. 수확규정 위반	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련한 경우		연장 복무
5. 동일사항 반복 위반	가.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.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.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편입 취소
			연장 복무
			경고



## 1-5 |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- 의무자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
  - ※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됨
- 신고내용 : 편입당시 해당분야(업체) 미종사
-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
  -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신고
  - 병무청 홈페이지, 전화, 서신 등 모든 매체 사용 가능



###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 들어가기

병무청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www.mma.go.kr>

▶ 병무민원포털 → 국민신문고 → 복무위반 행위신고 → 신고하기



- 책임실태조사관 신고조사
  - 비밀유지조사 →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
  -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→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
- 신고조사 결과처리
  - 실태조사 결과 업체가 고발, 경고,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신고자는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지며 본인이 원하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함
    - ※ 전직은 위반행위를 한 본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함
  - 전직을 원하는 경우 업체가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함

※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(미교부), 임금체불, 폭행·폭언 등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 / 국번없이 1350)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신고

## 02

# 출장·파견은 갈 수 있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.
-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·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1년 이내입니다.
- 출장·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 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·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 복무처분 될 수 있으니 업체에서 출장·파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.



2-1.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
2-2.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2-3.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

## 2-1 |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
- 국내 교육훈련 :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6개월
- 국내 파견근무(출장 포함) :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1년
-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3개월 이상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: 승인
    - 병역지정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(승인없이 파견시, 연장복무등 처분)
  - 3개월 미만 국내교육훈련 및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근무 : 신상변동통보
    - 병역지정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후 파견(신상변동통보없이 파견시, 연장복무등 처분)
  - 7일 이내 국내교육훈련·파견근무 : 복무기록표에만 기재
    - 병역지정업체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

## ☞ 출장 및 파견의 의미

- “국내 출장근무”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개발·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·시험 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함
- “국내 파견근무”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,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

## 2-2 |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- 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
  - 산업기능요원이 제조·생산한 기계·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



- 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업소 출장
  -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
  -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



### 출장에 관한 위반사례

계약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지역의 수급관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, 약국 등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수급 활동

▶ 병역법 위반 : 연장복무

## 2-3 |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-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간 파견
  -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제조·생산 공장 파견
  - 그 밖에 제조·생산한 기계·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



- 파견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 업체로의 파견
  - 그 해 고발·경고·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 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
  -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
  - 파견 받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



### 동일법인내 파견 위반사례

○소재의 병역지정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동일 법인내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공장에 파견승인 없이 5개월 동안 근무

▶ 병역법 위반 : 5개월 연장복무



### 파견기간 위반사례

○소재의 병역지정업체 사장이 산업기능요원을 동일 법인내의 비병역지정 업체인 다른 공장에 파견승인을 받아 근무시키다가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로 복귀시키지 않고 13개월 동안 계속 근무시킴

▶ 병역법 위반 : 13개월 연장복무

## 03

#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(당연전직)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(승인 전직)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습니다.
- 당연전직·승인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(6개월 복무후 승인전직은 14일)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-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.

- 3-1. 당연전직,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- 3-2.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- 3-3.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3-4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### 3-1 | 당연전직,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
-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(당연전직)
  -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 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
  -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  -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
-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.(승인전직)
  - ①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경우(2회에 한함)
  - ② 방위산업물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생산설비의 폐쇄·이전·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③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 승선이 어려운 경우
  - ④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된 경우
  - ⑤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

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 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(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)

- ⑥ 병역지정업체장의 부당한 복무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당해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(신고자에 한함)
- ⑦ 병역지정업체의 장(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)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
  - ※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, 상급자 등을 말할
  - ※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함
- ⑧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
- ⑨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상의 재해(사망)가 발생한 경우
- ⑩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



## 승인전직에 관한 위반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을 복무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

▶ 병역법 위반: 편입취소

## ○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절차입니다.

### - 승인신청서 제출

-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를 제출 다만, 동일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사유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직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함

※ 승인전직 사유 ⑤부터 ⑩까지는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

### • 준비할 서류

전직 신청서, 채용동의서(1개월 이내 발행) 등 증빙 자료

- 병역지정업체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,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
## - 전직승인

-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희망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, 상호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·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



## 유의사항

- 전직 승인 시에 반드시 업체의 동의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
-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  -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,
  -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 받아 처리하고,
  - 병역지정업체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시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
- 전직승인을 얻은 사람이 원래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기 전에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실상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.





### 3-2 |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
- 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
  -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승인일로부터 3개월(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14일) 이내 (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, 6개월 복무 후 승인 전직은 제외)
  - 최초 3개월(또는 14일)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
  - 전직대기기간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 취소 됨



### 3-3 |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대상 업체
  - 정보처리업체, 게임S/W제작업체, 영상게임기제작업체, 애니메이션제작업체,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, 방위산업체
- 전직 대상
  - 2년 이상 정보처리분야를 전공,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(현역은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증 취득자)





### 3-4 |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-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 남은 사람(다만,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)
  - 그 해 고발·경고·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
  - 당해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·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
  - 대기업·중견기업으로의 전직(보충역은 중견기업 전직 가능)
  -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

- 기간산업체(방위산업체 포함)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
-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편입자격이 없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



## 04

#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나요?



4-1.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
4-2.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.



- 산업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. 지각, 조퇴 등의 경우 모두 합하여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.
-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 복무 해야 합니다.





## 4-1 |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
### ○ 휴가

-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복무

### ○ 결근

- 1일 기준 근로시간 : 8시간(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)
- 8일 이상 무단 결근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

### 무단결근의 연장복무 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연간 회사에 규정된 연가일수 20일 중 20일 모두를 사용하였으나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, 5일 동안 결근

- ▶ 병역법 위반 : 5일 연장복무

### ○ 지각, 조퇴

-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병역지정업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
- ※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

- 지각 · 조퇴 · 외출(공무상 외출 제외)은 모두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

### 규정된 연가일수 초과 연장복무 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20일을 모두 사용하고, 하루는 4시간 조퇴, 하루는 사적인 4시간 외출

- ▶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연장복무

### ○ 병가

-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(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)
- ※ 업무상 부상 ·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포함

###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질병으로 60일 동안 병가를 사용

- ▶ 30일 연장복무



## 4-2 |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.

-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- 산업기능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,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
  -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.
  - ※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병역판정검사 가능함
  - 병역판정검사이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-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
    - 병무용진단서(병무청 지정병원 발행)



- X-ray, CT,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
-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의 처리기준
  - 신체등급 5급 :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
  - 신체등급 6급 :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
  -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: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 근무

### 참고사례

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,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4급이 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바뀌지 않음

- ※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병무청 지정병원 → 지정병원 조회



## 05

#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은 가능합니다.
-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
5-1.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

5-2.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

## 5-1 |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

### ○ 수학금지

-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 불가
- 주간학과 학적보유자가 동일학과 야간과정을 수학하여 주간과정의 학점취득 불가

### ○ 수학금지 위반처벌

- 위반내용 : 산업기능요원이 주간에 수학한 경우
- 위반시 : 편입취소 또는 연장복무

## 5-2 |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### ○ 수학할 수 있는 경우

-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
-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등 수학



-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(입학)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(다만, 연간 남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함)



### 주간대학 수학 위반사례

산업기능요원은 주간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으나, ○○대학 주간학과에 1년간 수학

▶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

### 주간과정의 야간수업 위반사례

경영학과 주간대학 학적보유자가 임명휴학을 신청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면서, 야간대학의 동일학과 과정에 복학하여 야간에 1년 수학

▶ 병역법 위반 : 1년 연장복무



##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 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이며,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-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병역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
6-1.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6-2.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



## 6-1 |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### ○ 허가대상

-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, 국외출장 등
- 휴가기간 내 개인여행 등

### ○ 허가신청 및 기간

-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국외여행허가추천서(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) 제출
- 허가기간 : 모두 합하여 1년
-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 : 모두 합하여 3개월
- ※ 승선분야 등 해외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편입원서와 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



## 6-2 |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

### ○ 행정처분 대상

- 국외여행(연장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

### ○ 행정처분 내용

- 편입취소



### 허가기간에 관한 위반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3개월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기간보다 7일 늦게 입국

▶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



## 7-1 |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
-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.
  - 편입한 후 6개월 이내에
  -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
  -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
  - ※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 
(병무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ma.go.kr>)  
→ 병무민원포털 → 전문/산업 →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/승선 민원신청 → “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” 화면)
-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전직대기 중인 경우(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 군사교육소집 가능)
  - 국외근무 또는 승선종일 경우
  -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



-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 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
  -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
  - 신체등급 4급으로서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
    -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(퇴영)된 사람 중 입영신체 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이 초과된 사람
    -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(퇴영 포함)된 사람
    -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
  -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군사훈련을 20일 이상 받은 사람
  -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
  -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후 편입된 사람



## 7-2 |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- 군사교육소집일자 인터넷 예고
  - 병무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ma.go.kr>) → 병무민원포털 → 전문/산업 → 전문연구/산업기능/승선 조회 및 발급 → “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/부대조회” 화면
-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질병, 심신장애, 회사 주요업무 수행
  - 본인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



## 7-3 |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.

- 군사교육소집기간 : 4주(의무복무기간에 포함)
-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.
  -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
  -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 (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)
- 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사유(퇴영)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훈련 기간 중 직계 존·비속이 사망한 경우
  -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
  -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

##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

-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은 34개월,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은 26개월,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후 편입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(26개월)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정합니다.
-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부터 포함되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를 해야 합니다.



8-1.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로부터 포함됩니다.

8-2.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

## 8-1 |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
### ○ 의무복무기간 계산

-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부터

## 8-2 |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### ○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

- 휴직(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·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) 또는 정직 기간
- 병역지정업체의 휴업·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 (시설·장비운영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)
-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모두 합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
-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

-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
- 전직대기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
-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아 연장복무가 결정된 기간
-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



### 참고사례

- 병역지정업체에서 기계조립 업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밀량작동 중 손가락이 끼어 치료를 위해 8개월 동안 휴직
  - ▶ 휴직기간 8개월 모두 의무복무기간 포함
- ※ 업무상 재해·질병의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

##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되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,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.
-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.



9-1.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9-2.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
9-3. 편입취소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

## 9-1 |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○ 편입취소사유

-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
-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
-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
- 해당분야의 기술자격·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농·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전직대기기간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 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
-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



-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산업기능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



### 편입취소에 해당되는 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적성과 직장환경에 적응치 못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퇴직

▶ 편입취소





## 9-2 |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
### ○ 의무부과

-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

### ○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

- 단축대상 : 편입 취소된 사람

#### - 단축기간

-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기간
-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

### ○ 복무기간 단축 제외

- 부모·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·순직자나 전·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



## ▶ 편입취소 후 복무기간 단축 사례

-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A씨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270일 근무 후 해고되어 편입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일수
  - ▶ 복무기간 단축 : 89일
  - 【 교육소집기간(29일) + (의무복무기간(241일) ÷ 4일) 】
-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B씨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90일 근무 후 해고되어 편입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일수
  - ▶ 복무기간 단축 : 22일
  - 【 의무복무기간(90일) ÷ 4일 】





### 9-3 | 편입취소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-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
  -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,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
- 뒤로 미루는 절차
  -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  - 제출서류 :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 제기 서류
- 뒤로 미룬 이후 결과처리
  - 적법,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: 편입취소 후 의무 부과
  - 위법,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: 복직 또는 전직



###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

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▶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### 유의사항

- 화해의 경우
  -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. (단, 화해조서 등에 부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는 의무복무기간 산입)
- 취하의 경우
  - 취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원칙
  - 단, 업체와 의무자가 합의하여 복직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
-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
  -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

## 10

##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


-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.
- 또한 「병역법」 제44조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므로 병역법 제49조에 의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며, 동원지정이 된 경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
-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는 동원지정 방침상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, 일반예비군에 편성되어 향방훈련을 받게 됩니다.

10-1.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합니다.

10-2.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.



## 10-1 |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합니다.

### ○ 훈련대상 및 시간

구분		계	동원 훈련	동미참 훈련	항방 기본 훈련	항방 직계 훈련	소집 점검	예비 시간
신규 전역자(간부/병)								160
병	1~4 년차	동원지정자	2박3일					132
		동원미지정자		24시간		12시간 (하×2)		124
		공군 동원미지정자		2박3일				132
	5~6 년차	동원지정자			8시간	6시간	4시간	142
		동원미지정자			8시간	12시간 (하×2)		140
	7~8년차							160
간부	1~6 년차	동원지정자	2박3일					132
		동원미지정자		2박3일				132
	7~8년차							160

\* 복무만으로 된 해의 다음해부터 1년차이며,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

\* 산업기능요원은 병의 동원미지정자에 해당

## 10-2 |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.

- 법규보류 대상자 : 국방부장관이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동원(훈련) 및 예비군 교육 훈련을 보류한 사람
  - ※ 주요 법규보류 대상자 : 국회의원,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,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
- 후순위대상자 : 지방병무청장이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병력동원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(후순위 승인요청시)
  - ※ 후순위조정 승인대상 :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,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(해운업종의 경우 선장, 항해사, 기관사 등)의 필수요원 등





## | 산업기능요원 제도 상담 전화번호 |

청별	주소	우편 번호	전화번호	FAX
병 무 청	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	35208	042)481-2813 2818	042)481-2819
서 울 지방병무청	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	07360	02)820-4490~4 4496	02)820-4307
부 산 지방병무청	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	48208	051)667-5238 5254~5, 5257~9	051)667-5123
대구·경북 지방병무청	대구 동구 동내로 63	41069	053)607-6281~5	053)607-6250
경 인 지방병무청	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	16440	031)240-7281~6	031)240-7523
광주·전남 지방병무청	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8	61489	062)230-4253~4	062)230-4293
대전·충남 지방병무청	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	34944	042)250-4253 4256, 4453	042)250-4260
강 원 지방병무청	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	24342	033)240-6255	033)240-6260
충 북 지방병무청	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	28653	043)270-1351~2	043)270-1370
전 북 지방병무청	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	55033	063)281-3143 3253	063)281-3250
경 남 지방병무청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	51439	055)279-9254~7	055)279-9387
제 주 지방병무청	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	63219	064)720-3255	064)720-3260
인 천 병 무 지 청	인천 남구 노적산로 76	22205	032)454-2281~5	032)454-2250
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	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	11642	031)870-0253	031)870-0358
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	강원 강릉 울곡로 2705	25590	033)649-4216	033)649-4280



병무민원 전화 서비스 : 1588-9090

병무민원 인터넷 서비스 : [www.mma.go.kr](http://www.mma.go.kr)

산업지원병역일터 사이트 : <http://work.mma.go.kr>  
(복무관리포털 및 구인구직 시스템)

